민원에 대한 답변

▣ 답변 사항

번호	60	처리일자	2018. 2. 21.
질의 요지	**군산교육지원청 인사배치 기준과 원칙 준수함 (60번 질의에 대한 답변)**		
답변 내용	1. 2018.1.9.에 인사담당자 회의와 공문을 통해 2018.3.1.자 초등교원 관내 전보 인사서류 제출 안내(교육지원과-333, 2018.1.9.)가 있었으며, 공문내용 중「제출기한 이후에는 관내전보 대상자의 추가 제출 및 제외가 불가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교원에게 인사 서류 제출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제출 마감 후 추가 서류 제출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관내 전보서류 접수 마감이 2018.1.16.이었고, 검토기간은 2018.1.17.~1.23.이었습니다. 3. 서류접수 및 검토기간 동안에는 민원인이 상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미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표창 대상 학교들을 공개 검증하기 위한 자료만 탑재되어 있었고, 표창을 받는다는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민원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표창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의 시·군간 교사 전보 발표(2018.2.7.) 이후 2018.2.9. 민원인께서 상장을 가지고 오셔서 학교표창에 따른 추가 점수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토기간(2018.1.17.~1.23.)이 이미 끝났고, 추가 점수를 반영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받아 준다면 이와 유사한 다양한 경우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보인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일을 지나 추가로 인정해 준다면 이 또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2018.2.6. 전라북도교육청의 교과전담 배치 조정에 따라 정원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과원교사를 1순위로 배치하는 군산교육지원청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6. 2018.2.19. 군산교육지원청 인사발표 후 민원인이 제기한「오늘 인사 결과를 보면, 과원이었던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고, 다른 사유로 민원을 넣은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급감축으로 과원이었던 A교사는 군산교육지원청 인사배치기준에 의해 동일지역, 동일급지에 배치되었으며, 관내 전보 인사 발표 전 의견을 제시했던 B교사는 민원인보다 고득점에 의해 민원인께서 희망했던 1희망교에 배치되었습니		

	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1희망으로 원하던 학교로 배치되지 못하고, 희망했던 학교 중 군산산북초등학교로 배치되었습니다. 7. 관내 인사 발표 전에 여러 번의 검토·조정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군산교육지원청의 인사원칙에 의구심을 갖게 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8. 2018.3.1.자 관내 전보는 군산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과 배치기준에 의거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2.20. 민원인과 면담결과, 민원인께서는 위의 내용을 이해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군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인사과정에서 그 어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군산교육지원청 초등 인사담당 박수영(450-2634) 장학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 리 부 서			
소속	군산교육지원청	직 명	장학사
성명	박수영	연락처	450-2634